

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685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9월 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시민건강국장 박유미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은

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제1항’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
추진 중인 사업으로서,

나. 에이즈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서울시민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
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으로 '21.12월에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
료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

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
- 위탁기간 : 2022.1.1. ~ 2024.12.31.(3년)
- 사업비 : 340,000천원 ('22년)
 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: 170,000천원
 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: 170,000천원
- 수탁자 선정방법 : 재위탁
- 추진현황
 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
 - 최초위탁 : 1999.1.14.
 - 1차 ~ 2차 : 1999.1.14. ~ 2000.12.31.(1년 단위)
 - 3차 ~ 9차 : 2001.1.9. ~ 2021.12.31.(3년 단위)
 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
 - 최초위탁 : 1997.1.10.
 - 1차 ~ 4차 : 1997.1.10. ~ 2000.12.31.(1년 단위)
 - 5차 ~ 11차 : 2001.1.9. ~ 2021.12.31.(3년 단위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
 -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교육
 - 보건관계자 대상 교육
 - HIV 취약계층 및 노인 대상 교육

-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
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
 - 성소수자 대상 홍보 및 노인 대상 홍보
 - 일반인 대상 및 대중매체 홍보
 -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
 -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

다. 필요성

-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에이즈 감염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·홍보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·물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및 제23조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·관리와 감염인의 보호·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6조

제26조(업무의 위탁)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“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” 사업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 라 함)¹⁾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,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
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검토

가. 민간위탁 사무의 배경

- 에이즈(후천성면역결핍증)는 성관계,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, 병원 관련 종사자가 바늘에 찔리는 등의 의료사고에 의한 전파,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로 전파되는 수직감염 등의 감염경로가 있음.²⁾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)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에이즈 기본정보 소개 페이지참조

- 에이즈는 확실한 전파경로가 있어 누구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감염위험행동을 하지 않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예방할 수 있고,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음.
-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에이즈 감염인이 0.02%에 불과하고, 일반인의 82.8% 이상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³⁾
 - 에이즈를 자신과는 관계가 없으며 동성애자 혹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.

나.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

- 에이즈는 ‘질병의 전염병(An epidemic of disease)’인 동시에 ‘의미의 전염병(An epidemic of meanings)’로도 불리우며, 질병 자체의 확산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등 피해를 주는 것과 함께 질병이 내포하는 고정관념과 편견, 배제의 이데올로기 확산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, 에이즈의 원인, 감염경로, 치료 기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된 확산은 예방, 검진, 치료 노력을 가로막고 에이즈에 취약한 집단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 따라서 에이즈 감염예방과 퇴치를 위해서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. 4)

3) 질병관리본부(2019). 2019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·태도·신념 및 행태조사.

- 국내에서는 1985년 국내에 HIV 감염인이 처음 발생한 것을 계기로, 1987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된 바 있음. 본 사무는 동법 제3조 및 제 26조,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무로 법적 타당성을 가짐.
- 또한, 정부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차별적 태도,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정책과 지역사회 홍보·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,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에이즈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활동을 시작한 바 있음.⁵⁾

다. 민간위탁 사무 경과 및 현황

- 서울시에서는 에이즈 확산을 막고, 정확한 질병정보와 함께 예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은 1999년,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은 1997년부터 전문단체에 위탁해 운영해왔음.
- 해당사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으로 구분되며, 각각 사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4) 질병관리본부(2019). 2019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·태도·신념 및 행태조사.

5) 질병관리본부(2019). 「국가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정책」. 주간 건강과질병 12(48)

<표>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위탁 현황

	에이즈 예방 교육사업	에이즈 예방 홍보사업
위탁기간	2019.01.01. ~ 2021.12.31. (3년)	2019.01.01. ~ 2021.12.31. (3년)
최초위탁	1999.01.14	1997.01.10
위탁단체	(사)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	(사)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
인력	상근2인 (사무국장 1명, 직원1명)	상근2인 (사무국장 1명, 직원1명)
위탁내용	-시민·의료인·보건인·사회복지사·구 급대 교육 - 교육실 운영 - 전문지 제작 등	- 대중매체 홍보 - 성소수자, 어르신 등 대상 홍보 - 캠페인 등
위탁금액(2021년)	130,000천원	270,000천원

다.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

-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해당 사무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.

<표>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주요사업 추진실적

구분	사 업 명	추진실적		
		2019년	2020년	
에이즈 예방 교육	일반인 대상	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	105%	79%
		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강사 교육역량 강화교육	100%	100%
	의료인 및 보건 관계자 대상	중·고등 보건, 상담교사 에이즈 바로알기 전문교육	100%	-
		복지·구조공무원 대상 에이즈 바로알기 전문교육	100%	100%
		재가요양센터 영양사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	-	100%
	노인 및 HIV감염 취약계층 대상	노인 대상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	100%	150%
		성소수자를 위한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	100%	150%
	에이즈	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자문회의	100%	100%

구분		사 업 명	추진실적	
			2019년	2020년
	예방 전문사업	에이즈 예방교육사업 평가회의	100%	100%
에이 즈 예방 홍보	성소수자 대상	현장캠페인	100%	100%
		콘돔카페 운영	100%	100%
	노인 대상	소책자 제작	100%	100%
		홍보물 제작	100%	100%
		복지관 배포	100%	100%
		캠페인	133%	100%
	청소년 대상	홍보수첩 제작	100%	100%
		캠페인	100%	100%
	대중매체 홍보	마을버스(내부, 외부, 후면 광고)	104%	100%
		전자 게시판	-	100%
사업평가	사업평가	100%	100%	

-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과 홍보, 두 가지 사업 모두 거의 모든 지표에서 100%이상의 목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그러나 현재 제시하는 추진실적 달성율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.
- 목표 대비 실적 측정 외에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, 인식변화 등을 측정한 결과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,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
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⁶⁾에서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.
- 또한, 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」 제2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2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.
-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보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에이즈라는 특수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. 따라서,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.

6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4 종합의견

- 동 위탁사무는 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,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단순한 측면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성과지표의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하겠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은 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제1항’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,
- 나. 에이즈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서울시민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으로 '21.12월에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
- 위탁기간 : 2022.1.1. ~ 2024.12.31.(3년)
- 사업비 : 340,000천원 ('22년)
 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: 170,000천원
 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: 170,000천원
- 수탁자 선정방법 : 재위탁
- 추진현황
 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
 - 최초위탁 : 1999.1.14.
 - 1차 ~ 2차 : 1999.1.14. ~ 2000.12.31.(1년 단위)
 - 3차 ~ 9차 : 2001.1.9. ~ 2021.12.31.(3년 단위)

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
 - 최초위탁 : 1997.1.10.
 - 1차 ~ 4차 : 1997.1.10. ~ 2000.12.31.(1년 단위)
 - 5차 ~ 11차 : 2001.1.9. ~ 2021.12.31.(3년 단위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
 -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교육
 - 보건관계자 대상 교육
 - HIV 취약계층 및 노인 대상 교육
 -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
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
 - 성소수자 대상 홍보 및 노인 대상 홍보
 - 일반인 대상 및 대중매체 홍보
 -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
 -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

다. 필요성

-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에이즈 감염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·홍보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·물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및 제23조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·관리와 감염인의 보호·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감

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6조

제26조(업무의 위탁)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유경숙 (☎ 2133-7684)